

나프타 공급부족 등에 따른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추진

▶ 글로벌 나프타 부족 등에 따른 포장재 수급난으로 업계의 즉각적인 원산지 표시 포장재 교체가 불가함에 따라, 한시적 단속 유예 제도의 도입이 필요

□ 개요

- (신청대상)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가 변경되어 포장재의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여야 하나 포장재 수급난으로 즉각 변경이 불가능한 업체
- (접수처)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원사는 협회, 콩의 경우 aT, 그 외 비회원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
 - ①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277, zigu@korea.kr
 - ②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전략작물육성단): 061-931-0072, wheat_soy@at.or.kr
 - ③ 한국식품산업협회(산업기획팀): 020-3740-8129, yeop839@kfia.or.kr
- (신청기간) ~2026.5.15.(금)

□ 세부 추진 절차

- ① 신청 접수
- ② 타당성 검토 및 현장 점검
 -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원산지 조사원을 투입하여 무작위 현장 점검 실시
 - 실제 포장재 재고량 및 신청 내용의 진위 여부를 교차 검증하여 제도 악용 방지
- ③ 유예 기간 부여
 - 검토 결과에 따라 업체별 적정 유예 기간(최대 6개월 내외) 확정 및 개별 통보
 - ※ 유예기간중 포장재 미소진시 1회 기간 연장 가능
- ④ 사후 관리 및 조기 정상화
 - (디지털 보완 조치) 소비자 알 권리 보호와 물리적 자원(스티커, 종이 안내문 등) 낭비 방지를 위해 '디지털/온라인 중심의 원산지 변경 안내' 의무화
 - *자사 웹사이트 팝업, 공식 앱 푸시 알림, 온라인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내 공지, 오프라인 대형 유통매장 내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 등
 - (조기 통보 의무화) 부여된 유예 기간 종료 전이라도 올바른 원산지로 변경된 신규 포장재를 생산하여 적용하는 경우, 업체가 농식품부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 부여

□ 향후 추진 일정

- '26.4월: 유예 신청 접수(~5.15), 타당성 검토(현장점검 병행) 및 업체별 승인 순차적 통보
- '26.5월~: 승인 업체 대상 임시 표시 이행 실태 사후 모니터링 및 조기 정상화 여부 파악

붙임 1**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신청서**

1. 신청인(업체) 정보	업 체 명(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담 당 자(성명/직위)	
	연 락 처(전화/이메일)	
2. 신청 내용 (대상 품목 및 유예 요청) ※ 품목이 많을 경 우 별지로 신청 가 능	원산지 변경 현황	(기존) → (변경)
	대상농산물품목(제품명)	
	기존 포장재 잔여 재고량:	약 (매/kg/개)
	월평균 포장재 소요량	약 (매/kg/개)
	유예 요청 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개월간)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실제 재고 소진 예상 기간을 기재)
3. 신청 사유 (구체적 기재)	나프타 수급난으로 인한 포장재 제작 지연 상황 및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원산지 불일치 경위 등 기재	
4.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 계획	[] 자사 웹사이트 팝업, 공식 앱 푸시 알림, 온라인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내 공지 등	
	[] 오프라인 대형 유통매장 내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	
	[] 기타 ()	
5. 서약 및 동의 사항	본 업체는 제출한 증빙 서류 및 재고량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원 산지 조사원의 무작위 현장 점검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예 기간 종료 전이라도 올바른 원산지가 표시된 신규 포장재가 생산·입고 되는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또는 관련 협회)에 통보하고 정상 표시 제 품을 유통할 것을 약속합니다.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소비자 안내 미이행 등 위반 사항 적발 시 유예 승인 이 취소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첨부 서류]

1. 수입선 변경 확인 서류 (수입신고필증, 계약서 등) 1부.
2. 포장재 발주 지연 증빙 서류 (제조사 확인서 등) 1부.
3. 기존 포장재 재고 증빙 자료 (재고 대장, 현장 사진 등) 1부.
4. 보완조치 계획(웹페이지 게시 계획 등) 1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1. 신청인(업체) 정보	① 업체명(법인명)	
	②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소재지	
	⑤ 담당자(성명/직위)	
	⑥ 연락처(전화/이메일)	
2. 신청 내용 (대상 품목 및 유예 요청) ※ 품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신청 가능	⑦ 원산지 변경 현황	(기존) → (변경)
	⑧ 대상농산물품목(제품명)	
	⑨ 기존 포장재 잔여 재고량:	약 (매/kg/개)
	⑩ 월평균 포장재 소요량	약 (매/kg/개)
	⑪ 유예 요청 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개월간) <i>(최대 6개월 이내에서 실제 재고 소진 예상 기간을 기재)</i>
3. 신청 사유 (구체적 기재)	⑫ 나프타 수급난으로 인한 포장재 제작 지연 상황 및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원산지 불일치 경위 등 기재	
4.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 계획	⑬ [] 자사 웹사이트 팝업, 공식 앱 푸시 알림, 온라인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내 공지 등	
	⑭ [] 오프라인 대형 유통매장 내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	
	⑮ [] 기타 ()	
5. 서약 및 동의 사항	본 업체는 제출한 증빙 서류 및 재고량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원산지 조사원의 무작위 현장 점검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예 기간 종료 전이라도 올바른 원산지가 표시된 신규 포장재가 생산·입고되는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또는 관련 협회)에 통보하고 정상 표시 제품을 유통할 것을 약속합니다.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소비자 안내 미이행 등 위반 사항 적발 시 유예 승인이 취소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⑯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첨부 서류]

- ⑰ 1. 수입선 변경 확인 서류 (수입신고필증, 계약서 등) 1부.
- ⑱ 2. 포장재 발주 지연 증빙 서류 (제조사 확인서 등) 1부.
- ⑲ 3. 기존 포장재 재고 증빙 자료 (재고 대장, 현장 사진 등) 1부.
- ⑳ 4. 보완조치 계획(웹페이지 게시 계획 등) 1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 ① 업체명 또는 법인명
- ②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성명
- ③ 사업자 등록번호
- ④ 본점 소재지
- ⑤ 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신청 관련 소통할 수 있는 담당자명 기재)
- ⑥ 신청 관련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처(전화/이메일) 기재
- ⑦ 원산지 변경사항 예) (기존) 중국산 → (변경) 국산
- ⑧ 대상농산물품목 및 제품명 기재.
 - ※ 품목 및 제품명이 많은 경우 칸을 나누어 추가 기재 예) 콩(○○두유)
- ⑨ 기존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재의 잔여 재고량
- ⑩ 월평균 포장재 소요량
 - ※ 유예추정기간(월) ≒ ⑨ 기존 포장재 잔여 재고량 / ⑩ 월평균 포장재 소요량
- ⑪ 유예 요청기간
- ⑫ 나프타 수급난으로 인한 포장재 제작 지연 상황 및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원산지 불일치 경위 등 기재
- ⑬ [] 자사 웹사이트 팝업, 공식 앱 푸시 알림, 온라인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내 공지 등 여부
- ⑭ [] 오프라인 대형 유통매장 내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
- ⑮ [] 기타 () ⑬, ⑭ 외 소비자 대상 홍보 계획 여부
- ⑯ 담당자 명의로 신청
- ⑰ 수입선 변경 확인 서류 (수입신고필증, 계약서 등) 원본 또는 스캔본 첨부
- ⑱ 포장재 발주 지연 증빙 서류 (제조사 확인서 등) 원본 또는 스캔본 첨부
- ⑲ 기존 포장재 재고 증빙 자료 (재고 대장, 현장 사진 등) 원본 또는 스캔본 첨부
- ⑳ 보완조치 계획(웹페이지 게시 계획 등) ⑬, ⑭ 포함 소비자 대상 홍보계획 기재

붙임 2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관련 Q&A

1. 신청 대상 및 접수 절차 부문

Q1. 관련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영세 업체는 신청 절차에서 소외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협회 미가입 업체의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투트랙' 접수 방식을 운영합니다. 소속 회원사는 각 협회를 통해 일괄 신청하시면 되며, 비회원사는 농림축산식품부(또는 관련 기관)가 개설한 전용 이메일 창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 모든 업체에 동등한 기회가 부여됩니다.

Q2. 단속 유예를 신청하면 모든 업체가 일괄적으로 6개월의 유예를 보장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본 제도는 '일괄 6개월 부여'가 아닌 '업체별 맞춤형 유예 기간 설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출하신 포장재 재고 증빙 서류와 과거 월평균 소요량 데이터를 심사하여, 실제 잔여 재고가 소진되는 데 필요한 적정 기간(최대 6개월 이내)만을 차등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2. 소비자 안내 및 보완 조치 (디지털 대체) 부문

Q3. 유예 승인 시 소비자를 위해 매장에 원산지 변경 종이 안내문 등을 붙여야 하나요?

A. 이번 조치의 근본적 배경은 나프타 부족 등에 따른 포장재 원료 수급난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합성수지나 종이가 소모되는 오프라인 안내문 제작은 지양합니다. 대신, 자사 웹사이트 팝업, 공식 앱 푸시 알림, 온라인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최상단 공지, 대형 유통매장 내 디지털 사이니지(전자 안내판) 등을 활용한 '디지털/비대면 안내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Q4. 오프라인 소규모 매장에만 주로 납품하는 업체라 디지털 안내 매체 활용이 까다로운데 어떻게 하나요?

A. 자사 웹사이트나 앱이 없는 경우, 거래처(소매점)의 결제 포스(POS)기 화면을 통한 고객 안내 표출,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 영수증 내 원산지 변경 문구 삽입, 또는 거래처 발주 시스템망 내 공지 등 물리적 자원이 소모되지 않는 창의적인 디지털 대체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 심사 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 사후 관리 및 제재 부문

Q5. 서류상으로만 재고량을 부풀려 제출하고 부당하게 유예를 받는 악용 사례는 어떻게 방지하나요?

A. 서면 심사와 병행하여, 원산지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무작위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제출된 서류상의 재고량과 실제 창고 내 포장재 적재량이 일치하는지 철저히 교차 검증합니다. 만약 고의적인 허위 자료 제출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으로 유예 승인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Q6. 유예기간(예: 4개월)을 부여받았는데, 2개월 만에 올바른 원산지가 인쇄된 새 포장재가 납품되었습니다. 남은 2개월 동안은 기존 포장재를 마저 소진해도 되나요?

A. 절대 불가합니다. 유예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신규 포장재가 생산 및 입고된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또는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올바른 원산지가 표시된 제품을 유통해야 하는 '조기 정상화 통보 의무'가 부여됩니다. 신규 포장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기존 포장재를 계속 혼용하여 사용하다 현장 점검 등에서 적발될 경우 엄격히 단속 조치됩니다.

Q7. 부여받은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기존 포장재 재고가 소진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승인된 유예기간 내에 재고를 전량 소진하고 신규 포장재로 전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발생한 급격한 소비 침체, 매출 감소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객관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소진이 지연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